

서울고등법원 2021. 11. 17 선고 2021나201656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1. 11. 17 선고 2021나2016568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4. 30 선고 2018가합10270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

담당변호사 박복환

피고, 항소인 1. B

2. 주식회사 C

변론종결 2021. 11. 3.

판결선고 2021. 11. 17.

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4. 30. 선고 2018가합102704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5. 18. 체결된 매매예약,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2. 12.1)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106,048,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,048,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양도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는데,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,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3면 7~8행의 “퇴임하고…사람이다” 부분을 “퇴임하였다”로 고친다.
- 3면 13행의 “건축주”를 “건축주”로 고친다.
- 7면 7행의 “갑 1, 3”을 “갑 1, 2”로 고친다.
- 11면 3행의 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404호”를 “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3296호”로 고친다.
- 13면 표 ‘평가액’란 중 “440,000,000원”을 “404,000,000원”으로 고친다.

○ 14면 아래에서 2행의 “2017. 4. 26.”을 “2017. 4. 25.”로, 같은 면 마지막 행의 “같은 날”을 “2017. 4. 26.”로 각 고친다.

2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들의 주장 요지

원고와 피고들 및 D는, 피고들과 D가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원고에게 112,000,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소를 포함하여 일체의 민·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고, 이에 따라 D는 2020. 1. 17. 피고 회사가 마련한 자금으로 E에게 209,069,748원을, 원고에게 112,000,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 D가 2020. 1. 17. 원고의 채권자인 E에게 209,069,748원을 대위변제하고, 같은 날 원고에게 112,000,000원을 변제한 사실, 원고가 D, 피고 B에 대한 사기 등 고소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2020. 1. 17.자 고소취소장에 서명·날인을 한 사실, 원고가 같은 날 D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,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각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, 5, 7, 8,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, 을 제10,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원고와 D,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소취하 합의 등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점, 원고와 D 사이에 2020. 1. 17. 당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고소취하,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의 제공, 압류해제 등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, 이 사건 소의 취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위 금원 지급 직후인 2020. 1. 20.에도 고소취소의 효력을 둘러싸고 원고와 D 사이에 분쟁이 지속된 점, 제1심에서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도 ‘위 금원 지급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, 이에 원고도 보전처분, 강제집행, 고소취하를 한 것이다’라고 하면서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을 뿐,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은 점 등에

비추어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홍승구, 판사 홍지영, 판사 김영훈

별지

- 1)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“2018. 2. 22.”은 “2018. 2. 12.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.